

의안번호	2217491
의 퇴 인	최보운의원
회 답 일	2026.7.22.
추계번호	26B145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택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65억원, 2031년 1,215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6,201억원(연평균 1,240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국 비: 향후 5년 동안 3,100억원(연평균 620억원) 이상
- 지방비: 향후 5년 동안 3,100억원(연평균 620억원) 이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예산 지원 (안 제16조의2 제3항)	국비	633	626	620	614	608	3,100	620
	지방비	633	626	620	614	608	3,100	620
합계		1,265	1,253	1,240	1,227	1,215	6,201	1,240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제1항) · (현행) 지원할 수 있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신설>	의무규정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4항)<신설>	재량규정
2	안 제16조의3 (택시의 이용 보장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즉,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의 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현행 지원여부, 실시 규모 현황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고, 의무화에 따라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물량, 지원 단가, 이용수요 등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1항)
		○	(추계)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부재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제3항)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	• 지원대상인 장애인, 가구원 규모,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소요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제4항)
2	안 제16조의3 (택시의 이용 보장 등)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¹⁾ 중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를 구매하는 경우를 현시점에 예측하기 곤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준, 지원규모, 지원 기간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제1항 및 제2항)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시 소요비용을 추산함
 - 현행 승합차량으로 운영중인 택시는 기존 차량의 개조를 통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에 비용·기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일반택시의 대폐차 시 일정비율의 차량을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²⁾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중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보유한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운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는 일반택시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재원분담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았음
 - 이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현재 운행중인 차량의 대폐차 시 일정비율만큼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일반택시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구매가격의 차액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저상버스 의무도입 제도 시행 후 대폐차량 중 저상버스 도입 이행비율은 52%로 나타나고 있음(국토교통부 2024)³⁾
 - 다만, 현재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규모를 예시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유사입법례 보정계수로 52%를 적용하여, 매년 대폐차되는 일반택시의 52%를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로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하므로, 본 추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함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폐차 대상 차량 5,597대 중 2,909대가 실제 저상버스로 도입(52%)(국토교통부, 2024년)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는 모두 기존 차량의 대폐차 시 교통약자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저상버스는 도로구조·시설 등에 따른 예외노선이 인정되고 차량의 생산·공급 여건도 일반택시와 다르므로, 52%는 개정안에 따른 실제 의무장착 비율이나 준수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추계방법) 연도별 일반택시 면허대수에 대폐차율 16.05%를 적용하여 대폐차 예상 물량을 산정하고, 해당 물량의 52%를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로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된 물량에 차량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산함
- (추계대상) 연도별 일반택시면허대수는 최근 5년간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동 추세를 바탕으로 전체 택시수를 추정함
 - 일반택시 대폐차율은 2025년 일반택시 면허대수 대비 법인택시 대폐차 대수 비율인 16.05%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연도별 일반택시 대폐차 현황

(단위: 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일반택시(a)	85,336	84,385	83,355	82,517	81,775	-1.01%
대폐차현황(b)	8,499	9,596	9,630	12,269	13,127	11.48%
비율(b/a)	9.96%	11.37%	11.55%	14.87%	16.05%	-

주: 일반택시는 법인택시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표 3] 일반택시 대폐차물량 추정: 2027~2031년

(단위: 대)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일반택시(a)	80,131	79,322	78,521	77,728	76,943	392,645
대폐차 예상물량 ($b=a \times 16.05\%$)	12,861	12,731	12,603	12,475	12,349	63,020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 ($c=b \times 52\%$)	6,803	6,735	6,667	6,599	6,533	33,337

- 주: 1. 일반택시 물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을 적용하여 추산함
 2. 대폐차 예상물량은 연도별 일반택시 면허대수에 2025년 대폐차율 16.05%를 적용하여 산정함.
 3.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 수는 대폐차 예상물량에 저상버스 의무도입 실적을 준용한 보정계수 52%를 적용하여 추산함

□ (지원단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일반택시 차량보다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장착된 택시의 경우 구매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 간 구매가격 차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일반택시의 구매가격은 평균 3,240만원 수준⁴⁾, 휠체어 탑승장치 장착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평균 5,100만원 수준으로 약 1,860만원 차이가 발생
- 본 추계에서는 차량 1대당 구매가격 평균 차액 1,860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 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국가 930만원, 지방비 930만원)
 - 재원부담: 특수교통수단 보조사업 국비보조율 50% 적용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휠체어 탑승 택시 교체 시 차량구매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4]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일반택시 구매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대)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휠체어 탑승 택시 구매 대수(a)		6,803	6,735	6,667	6,599	6,533	33,337
단가(b)		18.6	18.6	18.6	18.6	18.6	-
합계(A=a×b)		126,545	125,267	124,002	122,750	121,510	620,074
	국비(A×0.5)	63,272	62,634	62,001	61,375	60,755	310,037
	지방비(A×0.5)	63,272	62,634	62,001	61,375	60,755	310,037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된 금액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음

4) A사 택시 2,950만원, B사 택시 3,53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각 차량회사 홈페이지 검색 기준), 전기택시는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격 고려 시 제외함
조달청 나라쇼핑몰에 등록된 장애인콜택시(카니발, 저상리프트형)의 경우 4,880만원~5,320만원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 재정소요액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된 금액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